

모인발명 주장 특허무효심판 - 발명의 동일성 판단: 특허법원 2022. 6. 9. 선고 2021허

1516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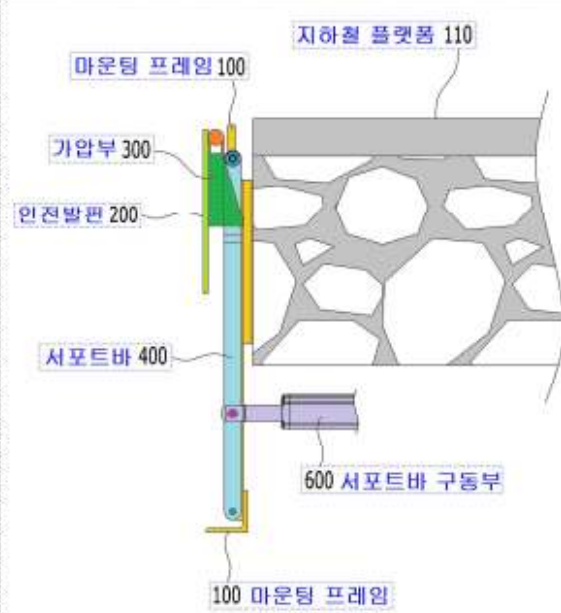


## 1. 모인발명 주장자의 입증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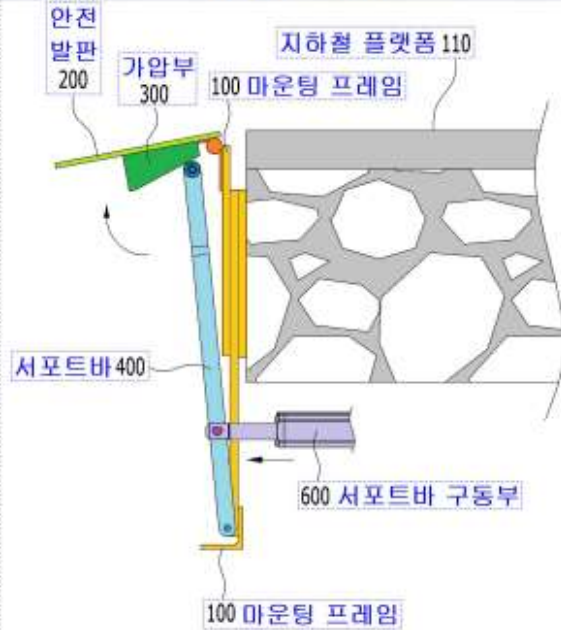
특허발명이 모인출원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이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측이 부담한다.

## 2. 특허발명과 모인대상 발명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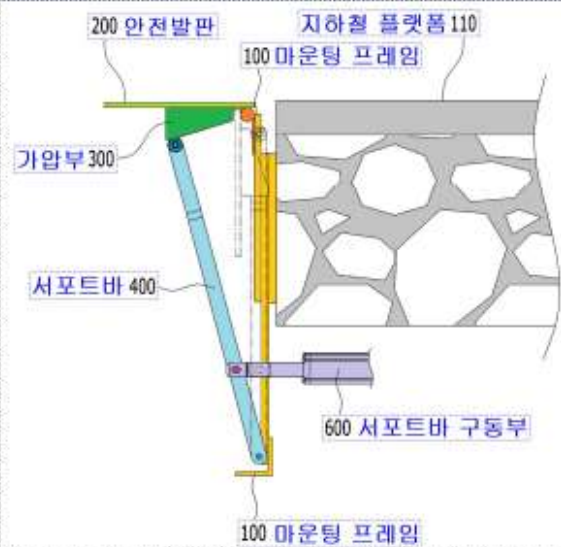
[도 1] 안전발판이 접힌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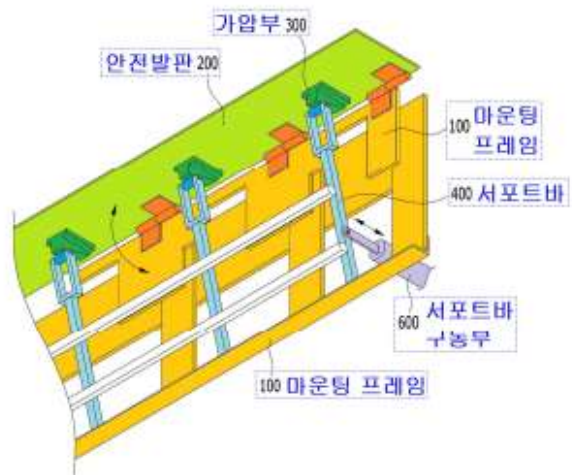
[도 2] 안전발판이 상측으로 일부 회전하여 펼쳐지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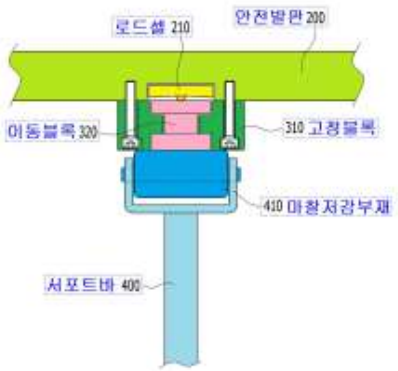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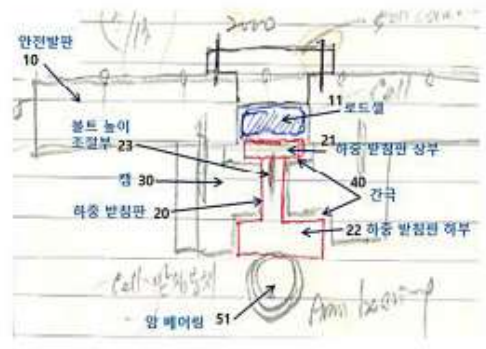
[도 3] 안전발판이 상측으로 최대한 회전하여 펼쳐진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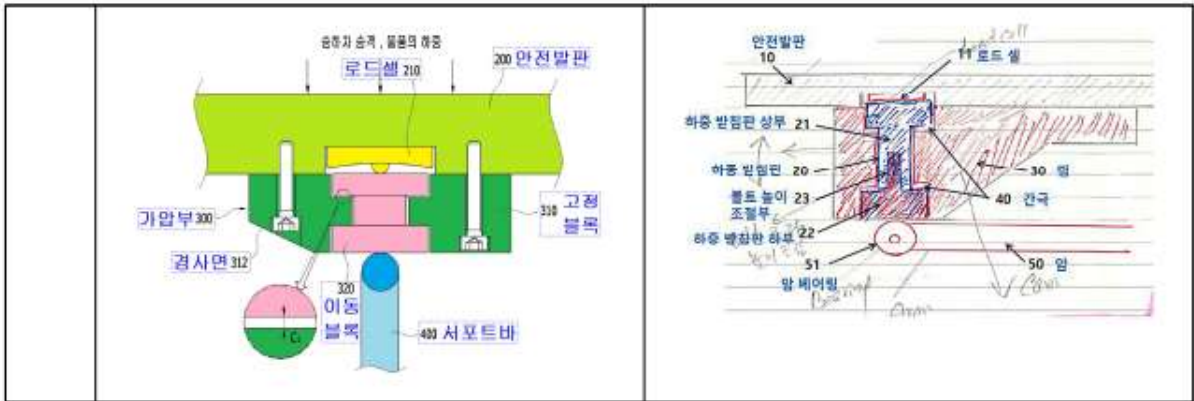


[도 4] 지하철 승강장 안전발판 장치가 플랫폼에 설치된 상태



| 구성<br>요소 |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   |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                                 |
|----------|---|---|
| 1        | 지하철 차량 도어와 승강장 사이의 공간에 배치되는 <b>지하철 안전발판 장치</b> 로서,                  | - 지하철 안전발판                                  |
| 2        | 지하철 플랫폼 벽면에 설치되는 <b>마운팅 프레임</b> ;                                   | - 대응 구성요소 없음<br>※ 참고: 공지기술<br>- 고정 브래킷(210) |
| 3        | 상기 마운팅 프레임에 대해 힌지 회전 가능하도록 마련되며 서로 이격되게 복수의 로드셀이 장착되는 <b>안전발판</b> ; | - 로드셀(11)이 장착된 안전발판(10)<br>※ 참고: 공지기술       |

|    |  |   |
|----|--|---|
|    |  | - 고정 브래킷(210)의 힌지(212)  |
| 4  | 상기 복수의 로드셀과 각각 마주보도록 상기 안전발판 하부에 장착되며 상기 로드셀을 선택적으로 가압 가능한 <b>가압부</b> ;  | - 캠(30) 내측에 설치된 <b>고 형상 하중 받침판(20)</b> 에 의해 로드셀을 가압하도록<br>- 안전발판(10)의 하부에 고정 결합된 <b>캠(30)</b> 과 <b>캠(30) 내측에 고 형상 하중 받침판(20)</b> 이 설치됨                  |
| 5  | <b>적어도 일부가</b> 상기 <b>마운팅 프레임에 대해 접근 또는 이격되는 방향으로 이동 가능</b> 하도록 마련되고, 상기 안전발판이 펼쳐진 상태에서는 상기 안전발판을 하측에서 지지하며, 상기 <b>가압부를 부분적으로 가압</b> 하여 상기 가압부에 의해 상기 로드셀이 가압되도록 하는 <b>서포트바</b> 를 포함하고, | - 캠(30) 내측에 설치된 <b>고 형상 하중 받침판(20)</b> 에 의해 로드셀을 가압하도록 <b>고 형상 하중 받침판(20)</b> 을 지지하고 있는 <b>암 베어링(51)</b><br><br>※ 참고: 공지기술<br>- 롤(160)이 구비된 지지 회전축(170) |
| 6  | 상기 <b>가압부</b> 는, 상기 안전발판에 고정 결합되는 <b>고정블록</b> ;  | - 안전발판(10)의 하부에 고정 결합된 <b>캠(30)</b>   |
| 7  | 상기 서포트바와의 접촉시 상기 로드셀을 가압하도록 상기 고정블록 내측에 이동 가능하게 마련되는 <b>이동블록</b> 을 포함하는  | - 캠(30) 내측에 상하로 슬라이딩되게 설치된 <b>고 형상 하중 받침판(20)</b>   |
| 도면 |   |   |



### 3. 특허심판원 심결요지 - 무효심판 청구기각

특허발명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특허법원 판결요지 - 청구기각, 심결유지

특허발명은 마운팅 프레임이 지하철 플랫폼 벽면에 설치되는 반면, 모인대상발명에는 대응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다(차이점 1). 특허발명은 안전발판이 마운팅 프레임에 대해 힌지 회전 가능하도록 마련되는 반면, 모인대상발명에는 대응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다(차이점 2). 특허발명은 서포트바의 일부가 마운팅 프레임에 대해 접근 또는 이격

되는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도록 마련되는 반면, 모인대상발명에는 대응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다(차이점 3). 이처럼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에는 차이점들이 존재하므로, 양 발명은 형식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위 차이점들은 특허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에 관한 구성요소의 차이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그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모인대상발명에는 피고의 특허발명의 위와 같은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 차이점들에 나타난 서포트바의 힌지 회전에 연동되는 안전발판의 폴딩, 펼침 및 지지 구조가 당해 기술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단순히 피고의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모인대상발명 내지 공지기술에 일부씩 나타나 있다는 사정 등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특허발명을 이른바 '모인출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2. 6. 9. 선고 2021허1516 판결

지재권분쟁, 침해대응/감정, 형사/민사소송, 손해배상, One-Stop 대응, A~Z 수행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